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-455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2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상 호 :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

2. 인가업무

인가업무 단위	금융투자업의 종류	금융투자상품의 범위	투자자의 유형
4-11-1	신탁업	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

※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1]

3. 변경인가일 : 2020. 12. 22.

※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